

# 2월 세무일지

6 (월)	특별징수도촉세 신고 및 납부
10 (금)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20 (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8 (화)	2005년 귀속분 지급조서 제출(연말정산분 등)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연말정산의 마무리 절차

### 1. 연말정산 세액납부와 환급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세목(소득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2. 연말정산서류 교부 및 제출

####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2006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2006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6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신고서와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하여 1월분의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회사는(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귀속연월을 2006년 1월로 하여 "연말정산"란만을 기재하여 신고,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납부자』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2006년 7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6년 7월 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합니다.